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2. 16(금) 10:00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푸른미래도시국 주택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90호
- 나. 제 출 자 : 정재동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2. 제안이유

공동주택에서의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원 대상 사업에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(안 제4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).
- 나.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2항 신설).
- 다.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 지원한도율을 규정함(안 별표 1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, 제5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에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등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음.

나. 주요 내용

- 1) 지원 대상 사업에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(안 제4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).
- 2)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2항 신설).
- 3)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 지원한도율을 규정함 (안 별표 1).

다. 검토의견

-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등 상위법령에 따라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및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임.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안전 사고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생활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공동주택관리법

[시행 2024. 1. 1.] [법률 제18937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
제85조(관리비용의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(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 비용을 포함한다)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9., 2023. 6. 13.>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4. 1. 18.] [법률 제19213호, 2023. 1. 17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23. 5. 16.>

제5조(국민의 책무)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 [전문개정 2010. 6. 8.]